

# 예 산 총 칙

제1조 : 201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	세입·세출 예산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계		273,865,323	8,215,960
1.	일 반 회 계	267,434,110	8,023,023
2.	특 별 회 계	6,431,213	192,936
	의 료 보 호 기 금	778,885	23,367
	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	396,896	11,907
	주 차 장	3,946,291	118,389
	주 거 환 경 개 선 사 업	162,147	4,864
	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	490,921	14,728
	기 반 시 설 사 업	354,612	10,638
	지 하 수 관 리	297,561	8,927
	재 정 비 축 진	3,900	117

제2조 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3조 :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"채무부담행위조서"와 같다.

제4조 : 계속비사업은 없음.

제5조 :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5,700,000천원이다.

제6조 : 일반회계 예비비는 1,987,781천원으로 한다.

제7조 :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 비목간, 재해대책 및 복구비 간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